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05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이수진・민병덕・송옥주

민형배 · 서영교 · 백승아

이기헌・박 정・박홍근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인구·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 성과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 보상 및 출산율제고와 여성의 연급수급권 확대 등을 위하여 군 복무기한 중 6개월의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제도와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제도를 규정함.

그런데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이 6개월로 짧고, 출산크레딧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크레딧을 부여하는 등 제한이 있음에 따라 크레딧의

효과를 국민이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추가 산입기간을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출산크레딧의 경우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부터 1자녀당 2년씩추가 산입기간을 부여하며,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하고 크레딧발생 시점도 앞당기는 등 크레딧제도에 대한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주요내용

- 가.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 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의2).
- 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 다. 첫째 자녀부터 1자녀당 2년 이상으로서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범위를 1년에서 2년까지로 확

대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
-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수행을 마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기간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당 24개월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을 "전부를"로 한다.

-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자녀를 얻은 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그 자녀를 얻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년을"을 "2년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하되, 일반회계와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부 부담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1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녀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생 략)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한
	<u>다.</u>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기간 추가 산입)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u>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u>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	
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	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
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u><후단</u>	로 한다. <단서 삭제>
신설> 다만, 「병역법」에 따	
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	
<u>지 아니한다.</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
	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

③ (생략)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 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후단 신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 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입기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수행을 마친 날이 속하는 연도 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가 산입) ① 자녀가-----

> 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 은 날에 1자녀 당 24개월을---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자녀를 얻은 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u>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u> 개월 수

② (생 략)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 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
입기간에 대하여는 그 자녀	를
얻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	준
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	득
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u>4</u>	
<u>전부를</u>	
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	간
추가 산입) ①	
,	
<u>2년을</u>	

1. · 2. (현행과 같음)

- ② (생략)
-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 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 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 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 ⑥ (생 략)
-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 제 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 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 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 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 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 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 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 1. (생략)
 -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 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하되. 일반회계와 「고용보험법」 제 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가 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부 부담한다.
 - ④ ~ ⑥ (현행과 같음)

∥51조(기본연금액) ①
1. (현행과 같음)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 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 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 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 액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 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 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③ (생략)

<u>.</u>
기 /처체되 가야
가. (현행과 같음)

<u><삭 제></u>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